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298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
부과·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3. 7.

복지문화 위원회
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3. 7.
복지문화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 의 자: 달서구청장(보건소장)
- 발의일자: 2023. 7. 7.(금)
- 회부일자: 2023. 7. 7.(금)
- 검토기간: 2023. 7. 10.(월) ~ 7. 14.(금)

2. 개정이유

- 「지역보건법」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·징수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「지역보건법」 개정에 따라 근거규정을 변경(안 제1조, 안 제2조 및 안 별표)
- 나. 「지역보건법」 개정에 따른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(안 별표)

4. 검토의견
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지역보건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일부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한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도록 한 제22조제3항의 신설과 과태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부과·징수하도록 한 제34조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

- 안 제1조에서는 관련규정을, 안 제2조에서는 부과기준을 변경하고, 안 별표에서 새로 신설된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한 것으로
-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지역보건법

제22조(정보의 파기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.<개정 2023. 3. 28.>

③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 보건의료 관련 기관·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.<신설 2023. 3. 28.>

제34조(과태료)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신설 2023. 3. 28.>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개정 2023. 3. 28.>

1.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

2.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<개정 2023. 3. 28.>